

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25
----------	-----

2011년 6월 30일
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1년 5월 19일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1년 5월 26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3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
(2011년 6월 30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)

- 가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조)

3. 검토보고요지(수석전문위원 양재대)

동 조례의 상위법인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이 2010년 12월 13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, 동 조례 제2조(정의) 제1호와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50조”를 “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10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52조제1항”를 “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10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감독위탁공사”란 「<u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</u>」 제50조의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.</p> <p>2. “감독업무”란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「<u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</u>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<u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</u>」 제102조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----- 「<u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</u>」 제105조제1항----- -----.</p>